



# 서울고등법원

## 제 10 행정부

### 판 결

사 건 2013재누148 재심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a)동 103호

피고(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홍혜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이석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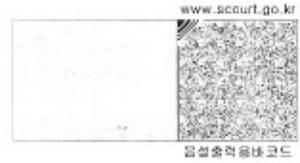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재누172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7. 25.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5. 20.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13. 재심소장 등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의하여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재심피고)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는 이를 고지받은 후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20.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4무33호), 위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은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확정일부터 7일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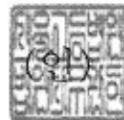


# 정본입니다.

2014. 7. 2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은숙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